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평등정책법안

검 토 보 고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657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4
2. 검토의견	6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8
1. 총칙(안 제1장)	18
2. 장애인지 예산 등(안 제2장)	20
3. 장애영향평가(안 제3장)	27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20인
- (2) 제 안 일 : 2024. 6. 19.
- (3) 회 부 일 : 2024. 6. 20.

나.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왔음.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 상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 수준, 여가생활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비장애인보다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

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고 장애평등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및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을 실현하고, 우리사회에 장애주류화를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전체 3개 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장애평등정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장애인지 예산 등	제5조(장애인지 예산)
	제6조(장애인지 통계)
	제7조(장애인지 교육)
	제8조(장애평등지수 등)
제3장 장애영향평가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제10조(장애영향평가의 시기)
	제11조(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제15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장애영향평가 기관)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함.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인지 통계를 산출함.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장애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함.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지역 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국가·지역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함.

여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중인 법령,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등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일곱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둠.

2.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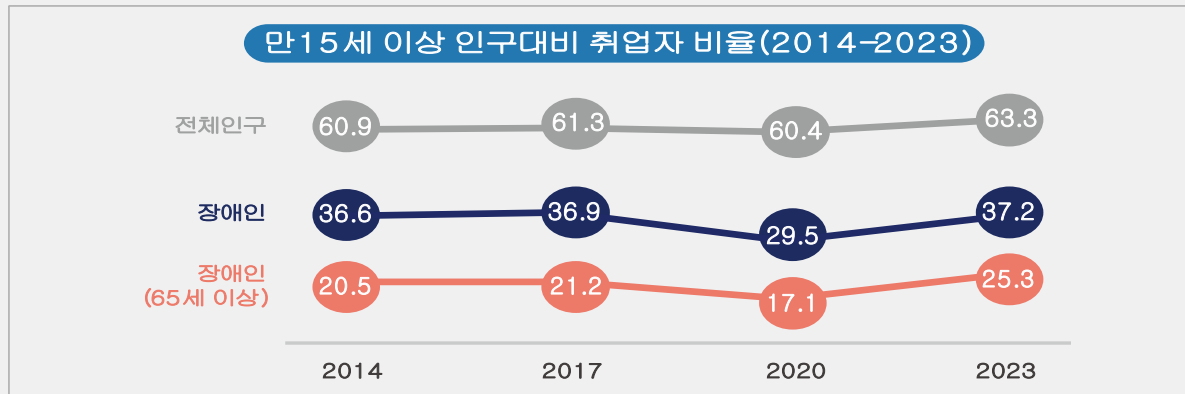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 및 평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¹⁾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지고, 경제적 인식과 행복감은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비장애인 가구 대비 월평균 소득과 지출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취업자 비율과 실업률 또한 비장애인 대비 좋지 않은 상황이며, 장애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계층 인식은 대부분 ‘중하’ 또는 ‘하’로 나타남.
 - 양질의 삶과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행복감²⁾ 역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약 80%에 이르고 있음.

1) 장민영. (2019).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③, 한국법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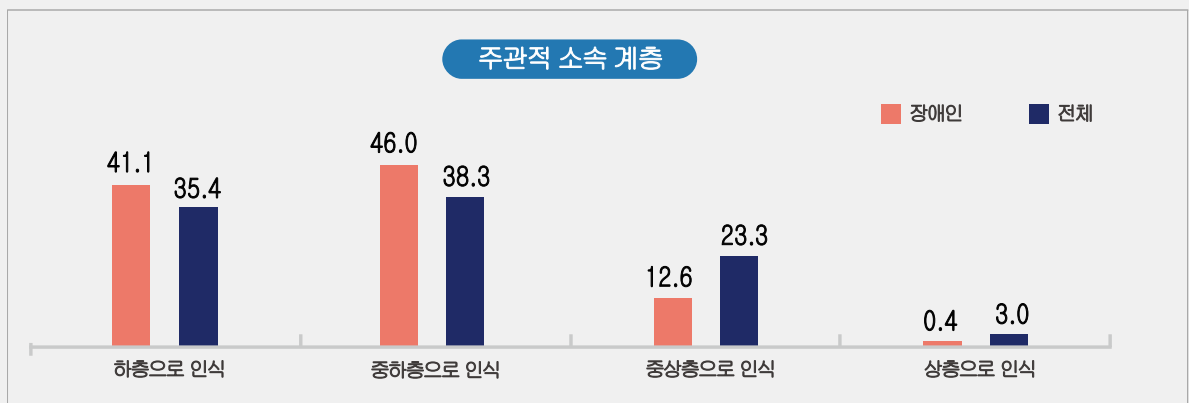
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한 정도를 의미함(국회미래연구원. (20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연구보고서 23-0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中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8천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 6천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낮음
-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구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장애인의 실업률은 4.2%로 2020년 5.8%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2.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중하’가 46.0%, ‘하’가 41.1%로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이 경제적 계층을 ‘상’ 또는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3.0%로 전체 인구 26.3%에 비해 절반 수준임



-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 6.56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는 비율은 80.1%로 2020년 63.5%에 비해 높아진 반면, 차별이 없다는 비율은 19.9%로 2020년의 36.5%에 비해 낮아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높고,

동등한 수준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며, 정책과 서비스 등이 시행되기에 앞서,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 배정 혹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일부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³⁾

□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예산 및 기금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별도의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⁴⁾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법률에 명시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장애평등’을 달성하고 우리 사회에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장애인지 예산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

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17-11.

4)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07호,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43호,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420호,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25호(이상, 「장애인권리보장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482호(「장애인기본법」)

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음.⁵⁾

- 장애영향평가는 국내·외적으로 그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장애인들의 평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정책 및 실무 관행의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함.⁶⁾

- 장애주류화란 기존 사회구조와 규칙을 변화시켜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장애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⁷⁾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로는 성인지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⁸⁾

-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⁹⁾

5) 김동기. (2008).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지예산제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6) 장민영. (2020). 영국의 장애영향평가 법제 현황 및 시사점. 해외법제리포트, 한국법제연구원

7)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 정책 13-14.

8)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을 참고하여 관련 조문 내용 및 구성 체계를 유사하게 차용하고 있음(참고자료 1: 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관련 조문 비교).

□ 다만,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장애영향평가 결과를 장애인지 예산서 등의 작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므로, 후속 입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장애평등지수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 관련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 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시행일 조정 등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의안번호 제2201542호, 7.10. 회부)과 지난 제21대 국회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장애인지 예산 및 장애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다수의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가 예상되는바, 법 집행의 효과성 및 법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별도 제정법에서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지 또는 「장애인권리보장

9)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법」의 일부 내용으로 규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동 법안은 장애 주류화를 제도화하고 장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양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 등을 도입하려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에 동의함.
- 다만, 국가재정운용의 입법체계를 고려할 때 성인지예산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률이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①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안 제16조)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② 장애인 정책 지원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장애영향평가기관(안 제21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장애영향평가가 기존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과 같은 (가칭)장애영향평가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한바,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 여건, 위원회의 설

치 필요성 및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이후에도 개최 건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 중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성격,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해당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조직과)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는 장애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판단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

다. 통계청

□ 안 제6조(장애인지 통계) 관련 인적통계의 장애구분통계 의무 부과 관련 규정은 장애정보의 민감성, 통계 방법상 제약 등 고려 시 수용이 곤란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통계법」상 유사한 제도로 자연인 성별을 구분한 통계 작성을 의무화한 ‘성인지 통계’ 운영중. 다만,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통계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지통계’ 작성 의무도, 장애를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통계 방법상의 한계* 등의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 작성하는 보고통계(480종)는 장애구분 불가

- 전체 인구 5,133만명중 등록장애인은 264만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후 통계를 지정하는 방식 등이 더 적합할 수 있음.

라. 한국장애인개발원

□ 안 제2조(정의) 관련 장애개념을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지어 협소한 범위로 규정할 경우, 등록장애인의 아닌 제도권 밖의 장애인의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1조(장애영향평가기관)** 현재 유사 영향평가인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평가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장애영향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규정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는 사회의 특정 분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장애 관련 분야에만 장애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에 장애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안에 찬성함.

바.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안 제2조(정의)** 관련 장애평등의 용어는 적절하나, 편견 차별을 해소하는 평등과 영향평가가 잘 연결되지 않음. 차라리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범명이 평등법이라는 것보다 다른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함.
- **안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부처의 예산권에 개입할 수 없는데, 장애인지예산에 관하여는 보고

받고, 개입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요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각 부처의 독립성이 훼손됨.

- 법과 조례를 영향평가하여 복지부에 보고하고, 검토받아 반영하는 것은 복지부가 장애인주관부처라는 점에서 이해되나, 모든 법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안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족하며,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 수, 장애인단체나 전문가 비율 등은 법에서 정해야 함.

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본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함.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제4조제1호의(다)에서 명시한 장애주류화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 장애인평등정책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제1조(목적) 조항에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에 기반하여 장애주류화를 도모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보장·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장애평등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법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정치, 경제활동, 정책 결정 등에 참여 보장 조항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장애인지 예산서 신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장애평등정책법안」 제정 법률안 찬성하며,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의 구체화 필요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각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 정책 수립 등에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평등정책 및 장애영향평가 등의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애영향평가 결과 반영 추진실적, 제도개선, 점검 등의 기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구성에 장애당사자를 2/3 이상 구성하여 당사자가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차. 대경사회복지연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 정책 사전 검토 조정’,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인권영향평가 보고’ 정책들과 유사하게 겹치는 지점이 많으며, ‘장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총칙(안 제1장)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칙 사항으로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평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집행,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 정의)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지 예산 및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 과정 및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장애

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장애인, 장애평등, 장애영향평가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통상 정의 규정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공통적 또는 높은 빈도로 사용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함.¹⁰⁾

□ 그런데 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 및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지 예산’에 관한 정의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의미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률이 선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지 예산에 관한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장애계에서는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¹¹⁾

□ 제정안에서는 장애영향평가의 개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애영향평가의 목적만을 기술한 것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정의가 잘못되었을 경우의 부작용

10) 국회 법제실. (2019). 법제이론과 실제.

11) 김동기. (2008).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지예산제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용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임.

-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찾을 수 없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영향평가를 장애인들의 평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법령, 정책 및 실무 관행의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일부 존재함.¹²⁾
-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장애인지 예산 등(안 제2장)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제2장에서 장애인지 예산 제도의 실시, 장애 종류별 구분 통계 산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 실시 의무,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의 개발·보급,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장애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障礙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12) 장민영. (2020). 영국의 장애영향평가 법제 현황 및 시사점. 해외법제리포트, 한국법제연구원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장애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장애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평등지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장애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장애평등 의식·문화 및 장애인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평등지수 및 지역장애평등지수 조사 결과, 장애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장애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5조 장애인지 예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재정에 있어 장애인지 예산을 도입하고자 함은 장애 영역에 대해 동정적·시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즉 적절한 예산의 분배는 장애인 권리에 중요하며,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국가 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예산 제도에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장애인지 예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¹³⁾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같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과 같은 재정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지 예·결산서 작성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2: 성인지예산 제도에 따른 재정 관련 법률 조문).
- (안 제6조 장애인지 통계)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13) 김용탁. (2010). 성인지 예산 제도와 장애인지 예산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 및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¹⁴⁾

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한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장애 정책 실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계청에서는 제정안과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인적 통계에서 장애 종류별로 구분된 통계를 산출할 경우,

모집단 확보 및 민감정보로 인한 응답률 저하 등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 작성에 있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7조 장애인지 교육)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상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한다면, 업무 수행 시 장애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17-11.

□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무원 등에게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9조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게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제정안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그에 필요한 법제적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장애평등정책법안」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 장애평등지수 등)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의 장애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장애평등지표와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장애평등지수와 지역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표(indicators)란 개념 속에 내재된 속성들이 표출되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함. 예를 들면, ‘사회지표’에는 인구, 문맹률, 이혼률, 빈곤률 등이 포함되고, 지수(index)란 경험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표의 결합을 의미함.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지수(socioeconomic status: SES), 부패지수(corruption percersion index: CPI) 등이 있음.¹⁵⁾

□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장애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 제8조제2항의 ‘장애평등지수’는 제4항, 제6항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국가장애평등지수’로 이해되는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15) 황성동. (2021). 알기 쉬운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제8조(장애평등지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장애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장애평등 의식·문화 및 장애인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평등지수** 및 지역장애평등지수 조사 결과, 장애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장애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국가장애평등지수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 의식·문화, 인권·복지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법 시행 전, 관련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칙의 시행일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3. 장애영향평가(안 제3장)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제3장에서 장애영향평가의 대상·시기, 결과 반영,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장애영향평가책임관 지정, 장애영향평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

재정법」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9조에 따른 대상정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특정장애영향평가의 결과 장애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장애영향평가결과와 장애인지 예산서 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영향평가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장애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장애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장애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2조 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정안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 결과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되고,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과 같은 재정 관련 법률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과 체계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노력 의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음(참고자료 2: 성인지예산 제도에 따른 재정 관련 법률 조문).

□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37호, 회부일 7.10.)에서도 법령, 세출예산사업 등과 같은 대상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16조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7조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정안은 장애영향평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각각 중앙 및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자문 위원회로 판단하여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 「장애인복지법」¹⁶⁾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16)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음.

- 참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문위원회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자문위원회 등으로 ①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¹⁷⁾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8조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정안은 장애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대상 정책의 선정, 장애영향평가서의 실시, 작성, 교육 및 장애인 예산서에의 반영 등 다양한 관련 업무를 총괄·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장애영향평가 관련 업무가 신속하고, 한층 책임감 있게 처리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업무이므로, 이를 기존 조직에서 흡수하여 집행할 경우 당분간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명목상으로만 지정한다거나, 혹은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적절한 담당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부터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¹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안 제19조 장애영향평가 교육)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임.

□ 다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부패·청렴교육,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 인식 교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이미 다수의 법정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참고자료 3: 법정 의무교육 관련 근거 법조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제정안 제7조에 따른 ‘장애인인지 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18)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경우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변경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평영향평가법」 관련 조문 비교〉

장애인지 예산 관련	
「장애평등정책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장애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障礙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장애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장애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평등지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장애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장애평등 의식·문화 및 장애인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평등지수 및 지역장애평등지수 조사 결과, 장애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장애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영향평가 관련	
「장애평등정책법안」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서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9조에 따른 대상정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특정장애영향평가의 결과 장애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등”이라 한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

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장애영향평가결과와 장애인지 예산서 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영향평가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장애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장애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장애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

애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참고자료 2: 성인지예산 제도에 따른 재정 관련 법률 조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u>성별영향평가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성별영향평가</u>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u>성인지(性認知)예산서</u>”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u>성평등 기대효과</u>, <u>성과 목표</u>, <u>성별 수혜분석</u>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u>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u>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u>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u>성인지(性認知) 결산서</u>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u>성인지 기금결산서</u>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u>성인지 결산서</u>,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u>, 제2항제2호에 따른 <u>성인지 기금결산서</u>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u>성인지 예산서</u>”(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u>지방자치법</u>」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u>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그 밖에 <u>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u>성인지 예산서</u>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u>성인지 결산서</u>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u>성인지 결산서</u>”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u>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u>9. 성인지 예산서</u>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u>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 법정의무교육 관련 근거 법조문〉

법률	관련 조문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법률	관련 조문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법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포함함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